

##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

## 당진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

제정 2022.6.29. 제2차이사회

**제1조(기부금의 설치)** 회장은 「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다목」 공익 목적 기부금 범위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
**제2조(기부금의 재원)** ①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기업, 단체, 개인의 출연금
2. 기부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에 수입금

**제3조(기부금의 운용·관리)** ① 기부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기부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당진시체육회 체육진흥기부금 운용관리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 지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체육회 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·임명 한다.
- ④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 1. 당진시체육회 사무국장
  2. 당진시체육회 이사회 운영팀장, 재정팀장, 학생지원팀장
-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담당업무 직원으로 한다.
-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5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기부금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부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부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

**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위원회 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

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 
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 
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  
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 
재적위원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  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기부금의 운용계획)** ① 회장은 기부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한다.  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
1. 기부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 
2. 해당연도의 기부금 사용계획  
3. 그 밖에 기부금운용에 필요한 사항

**제10조(기부금의 사용 등)**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되, 위원회의  
의결을 거쳐 회장이 집행한다.  
1.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
2. 읍면동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 
3. 시민체육대회 및 충청남도체육대회 지원  
4. 체육 꿈나무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 
5. 사무국직원의 복리후생비 지원  
6.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**제11조(지원방법)**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비는 회원단체에 지원함을  
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
할 수 있다.

**제12조(기부금사업계획 신청 및 결정)** ① 기부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 
하는 단체는 적합한 기부금사용 계획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회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한다.

**제13조(결산 및 보고)** ① 기부금의 결산 및 보고는 매 회계연도의 이사회와 정  
기총회에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(2022.06.29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